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24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0년 9월 2일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

나. 제안이유

- 국가산업단지 4단지 등 조성으로 인구와 유흥업소 증가에 따른 치안을
유지코자 양포파출소 건립을 위해 부지를 교환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취득재산】

□ 구)원평파출소

○ 토 지 : 224m²

○ 건 물 : 138m²

○ 기준가격 : 1,290,593천원(공시지가 기준)

【 처분재산 】

□ 양포파출소 건립 부지

- 토 지 : 1,494m²
- 기준가격 : 1,374,480천원(공시지가 기준)

라.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배 정 미

본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의거 양포파출소 건립을 위해 시유지와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 구)원평파출소인 구미시 원평동 121-5번지의 대지 224m²와 건물 138m²(공시지가 1,290,593천원)을 취득하고, 양포파출소 건립부지인 구미시 옥계동 556-2번지의 대지 1,015m²와 구미시 옥계동 556-3번지의 대지 479m²를 처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임
 - 본 건은 공단배후 주거지역 조성 및 산업 물동량 수송을 위한 교통요충지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옥계, 양포동 일대의 치안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부지교환 요청이 있어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치안활동과 주민들의 치안안정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